

사단 법인 한국 부식 학회 정관

1978년 6월 12일 허가
1979년 12월 4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식, 방식 및 그 응용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보급을 도모하여 산업진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부식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로 정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산 635-4번지에 둔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연구발표회, 학술강연회 및 감습회의 개최
-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과 배포
- 부식과학기술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국제 교류
- 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업적의 표창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5 조(법인 공여이익과 수혜자)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공여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제 6 조(지부 및 분회의 설치)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7 조(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8 조(명예회장, 고문)

- 본회에는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추대한다.

제 2 장 회 원

제 9 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부식과 방식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자로 정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 조(회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 정회원
부식과학 및 그 응용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을 가진자. 다만 정회원중 종신회비를 납부한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 학생회원
대학(초급대, 대학원)에서 부식 과학 및 그 응용에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자.
- 단체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
- 특별회원
본원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의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사업단체 또는 개인.
- 명예회원
부식과학 및 그 응용분야에 공적이 현저하며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자.

제11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2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중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 3 장 임 원**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회장 1인, 부회장 3인 포함)와 2인의 감사를 둔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하여 죄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며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채임한다.
- ②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추인과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회장, 부회장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채임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회장, 부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는 부회장중 년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정관시행세칙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의 의결

제22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0월중에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회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총회는 제 2 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 ①총회는 재직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4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0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총회소집권자가 질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제 2 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년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이 지명한다.

제25조(총회의결 제적사유)

-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워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산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이 사회의 기능)

- 이 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의 의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7조(의결 정족수)

-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②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이 사회의 소집)

-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회는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 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이사회는 제 2 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 사회 소집의 특례)

- ①회장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0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질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 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제 2 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년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0조(서면결의 금지)

- 이 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정)

-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

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에서 부수되는 수입
3. 재산에 생서기는 수입
4. 기타의 수입

제3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3조(세입제출 예산)

본회의 세입제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 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4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5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거나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동일 목적을 가진 유사단체에 기증한다.

제37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

사 3분지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변경 법인운영에 관한 사항

제40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진 위	성 명	주 소	임 기
회 장	전민체	서울종로구신교동6-28	2년
부회장	김신국	서울시 용산구신창동 4 가76-13	"
부회장	조종수	서울시 관악구대방동159-428	"
이 사	권순영	경남울산시 약사동707번지	"
	전웅상	서울시 종로구나원동27	"
	이범성	서울시 관악구상도동174-13	"
	이주성	서울시 성동구중곡동271-3	"
	윤창구	서울시 성북구하월곡동39-1	"
	남종우	서울시 관악구대방동357-2	"
	함병소	서울시 영등포구신도림동851-69	"
	김면섭	서울시 성동구성수동 1 가668-10	"

부 칙

1.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날(1978년 6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